ISSN 2733-9696(온라인)
ISSN 2733-9572(인쇄본)

2022
Vol.3 No.5

GTC BRIEF

한국 주도 역제안 기술지원 사업 프로그램의 당위성 분석과 시사점

이원아 / 손지희 / 한송희

GTC 녹색기술센터
GREEN TECHNOLOGY CENTER

ISSUE
05

한국 주도 역제안 기술지원 사업 프로그램의 당위성 분석과 시사점

이원아 / 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 wonalee@gtck.re.kr
손지희 / 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 jie.son@gtck.re.kr
한송희 / 국가기후기술협력센터 sh.han@gtck.re.kr

하이라이트

- 국내기관의 CTCN 역제안 TA 사업 추진 시, 국가주도성에 위배됨에 따른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CTCN) 사무국, 개도국 국가지정기구(National Designated Entity, NDE)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부정적 인식 등 장애 요인 포착
- 국내 기후기술의 해외 확산 촉진을 위해 국내 기후기술 보유기관의 수요에 기반한 역제안 기술지원(Technical Assistance, TA)의 원활한 추진과 이를 위한 당위성 마련 필요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상위 문서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COP 결정문, 이사회 자료 등 CTCN 설립 및 운영 관련 문서가 명시한 개도국 주도기조의 확고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상충되는 공급자 주도 강조의 역제안 접근방식의 한계점 확인
- 하지만, 결정문 상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주요 키워드를 근거로 역제안 사업의 대안과 새로운 기술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제안
  - (삼각협력) CTCN의 선진국 컨소시엄 파트너 기관 또는 회원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CTCN 회원기관, 개도국 간 기후기술 지식공유 및 기술지원 사업 등 삼각 협력 추진
  - (RD&D) CTCN TA의 이행결과를 RD&D(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요소 중 하나인 소규모 실증으로 연계하여 개도국 현지 사업화를 위한 준비 실행
  - (매치메이커) CTCN이 NDE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매치매이킹 행사 중 CTCN이 한국-개도국 NDE 간의 양자 협의를 주관

키워드

- 역제안 기술지원(Counter-proposal TA),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파리협정(Paris Agreement), 기술 메커니즘(Technology Mechanism), 기술 프레임워크(Technology Framework),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 위임사항(Mandate)

개요

역제안 사업이란?

- 기존 CTCN에서 진행하는 TA 사업들은 일반적으로 개도국의 요청에 기반하여 추진되며, 역제안 사업은 이와 반대로 국내 기후기술보유 기관이 대상지역/국가, 예산, 기술분야, 활동

유형을 특정하여 CTCN TA 또는 역량강화 및 지식교류 워크숍 등의 non-TA 활동을 역으로 제안하는 공급자 주도형 기술지원 사업 추진 형태를 의미

그림 1 수요자 중심과 공급자 주도형 CTCN 역제안 TA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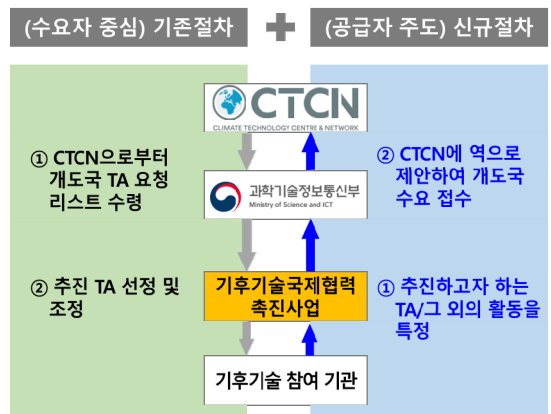

역제안 기술지원의 필요성

- 2020년 한국 CTCN 사업 추진현황 분석 결과, CTCN 사무국으로부터 공유받는 개도국 TA 수요 건수와 기술 분야가 제한적으로 국내 기후기술 사업 추진 희망기관과의 매칭에 애로사항이 발견되었으며, 개도국 TA 수요에 대한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국내 유망기술에 적합한 TA 발굴 방안 수립 필요성을 강조[1)]
  -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한국 CTCN 사업 추진 방식 및 유형의 다변화를 제안하고 개도국 수요대응형 TA 외에, 추진기관의 전문성과 보유기술에 기반한 공급자 주도의 프로보노 활동 역제안을 제시하였으며 첫 역제안 사례로 광주과학기술원의 캄보디아 대상 중력식 막여과 정수장치 보급을 위한 기술지원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베트남 지역 화력발전소 탄소광물화 기술 적용 기술지원이 있음

역제안 모델의 개발

- 2021년 국내 유망 기후기술을 개도국에 도입하기 위해 경제적, 환경·사회 제도적 갭(gap)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으로서 사업을 먼저 기획한 후, CTCN 및 개도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는 기술 공급자 중심의 사업인 역제안 모델을 개발[2)]
  - 이는 사업개발국과 사업대상국간의 상호호혜적 이익(Mutual benefits)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세부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사업기획 및 개발자의 입장에서 일관된 기준에 따라 기후기술 협력사업을 우선순위화하여 향후 3-5년간 단계적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본 사업 수준의 사업 기획을 시도

1) 양리원 외. (2020). 한-CTCN 협력 프로그램 확대 및 고도화 연구 : CTCN 기술지원(TA)을 중심으로 – 1차년도
2) 손지희 외. (2021). 한-CTCN 협력 프로그램 확대 및 고도화 연구 : CTCN 기술지원(TA)을 중심으로 – 2차년도

역제안 당위성 분석의 필요성

- 국내기관의 역제안 TA 사업기획 시 아래와 같은 이슈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 참여 독려가 어려움을 확인
  - (개도국 NDE) 역제안 TA는 개도국 수요 주도가 아니라는 인식에 따라 협력의향 확인에 비협조적
  - (CTCN 사무국) 개도국 요청을 바탕으로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CTCN의 위임사항, 기능 및 목적에 적절하지 않은 사업 선정을 우려
- 따라서 유엔기후변화 협약 하의 관련 문헌과 결정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내 공급자 주도의 CTCN 기반 역제안 사업 추진의 당위성 확보 필요

분석목적 및 방안

- (분석목적) 한국 주도의 역제안 기술지원 사업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당위성을 마련하고, CTCN 기능에 적합한 역제한 유형의 다양화 제안
- (분석방안)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기술 및 재정 메커니즘과 같은 상위 문서와 CTCN 관련 COP 결정문 분석을 통해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여 공급중심 역제안의 당위성 분석과 역제안의 다양성을 위한 신규유형 제안

그림 2 역제안 기술지원 사업 프로그램의 당위성 분석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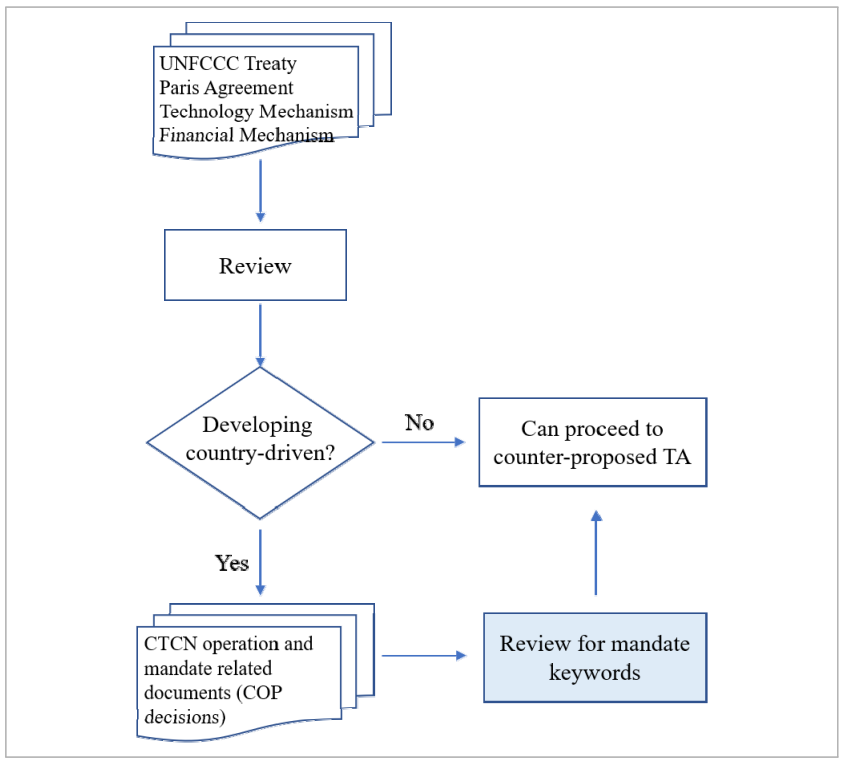

국가주도성 기반 수요중심 강조 기조

국가주도성 기반의 수요중심 강조 기조

- 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기술 및 재정 메커니즘과 같은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 관련 상위 문서는 개도국 주도, 개도국 요청에 따른 개도국 수요에 대응 등, 개도국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확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 1992년 6월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어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재원,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개도국의 필요와 요청에 따른 이행 조치**를 다룸
  - 협약에 따라 규정된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원 제공, 보험 그리고 기술 이전을 포함하여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충분히 고려한다고 명시[3)]
  - **개발도상국은 자발적으로** 사업이행에 필요한 특정기술·재료·장비·공법 또는 관행을 포함하는 재원 제공 **사업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안에는 가능한 경우 모든 부가비용에 대한 견적, 온실가스의 배출저감 및 제거증가에 대한 견적, 그리고 이로 인한 이익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4)]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

- 2015년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를 마련하며 적응, 재정 및 역량배양 분야에 **개도국의 국가주도적 접근을 강조**
  - 적응 행동이 **국가 주도적이고** 성 인지적이며 참여적이고 전적으로 투명한 접근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명시[5)]
  - 전지구적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 주도적 전략 지원을 포함한 공적 재원의 중요한 역할에 주목하고 개발도상국의 요구와 우선순위를 고려**하면서, 다양한 재원, 기제 및 경로를 통하여 기후재원을 조성하고 국가 주도적 전략과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 소도서 개발도상국과 같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특별히 취약하고 그 역량 상 상당한 제약이 있는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우선순위와 요구를 감안할 것을 명시[6)]
  - 역량배양은 국가별 필요를 기반으로 반응하는 **국가 주도적인 것이어야 하고**, 국가적, 지방적 그리고 현지적 차원을 포함하여 당사자, 특히 **개발도상국 당사자의 국가 주인의식**을 조성할 것을 명시[7)]

3) UN. (199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rticle 4, Para 8
4) UN. (199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rticle 12, Para 4
5) UN. (2015). Paris Agreement. Article 7, Para 5
6) UN. (2015). Paris Agreement. Article 9, Para 3 and 4
7) UN. (2015). Paris Agreement. Article 11, Para 2

기술 메커니즘

- 2012년 기술 메커니즘의 완전한 운영을 위한 준비를 다룬 COP17 결정문은 **개도국의 기술 수요는 국가 주도적일 것을 강조**
  - 기술 개발 및 이전 강화 조치의 목적은 협약의 완전한 구현을 달성하기 위한 감축 및 적응 조치를 지원하는 것이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 수요의 확인은 국가 주도 접근 방식**으로 국가 상황 및 우선순위에 기초할 것임을 재확인[8)]

재정 메커니즘

- 1995년에 개최된 첫 번째 당사국총회 결정문 중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 주체 또는 주체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 우선 순위 및 자격 기준에 대한 지침에서 재정 메커니즘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은 **국가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각 국가의 개발 우선순위에 부합해야 함을 명시[9)]
  -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목적과 원칙에 따르면 기금은 **국가 주도적 접근법을 추구**하고,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효과적인 참여를 통해 국가 차원의 참여를 촉진하고 강화할 것임을 명시[10)]
  - **지구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acility, GEF) 운영전략의 운영원칙 제4호에는 GEF가 국가 주도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초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 규정[11)]

공급중심 역제안의 당위성 분석

공급중심 역제안의 당위성 분석

- 위와 같이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상위 문서에서 개도국 국가주도성 기반의 수요중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와 상충되는 공급자 주도가 강조되는 접근방식의 위험성과 한계점 확인
- 따라서 CTCN 및 기술 메커니즘의 이행기관과 같은 유관기관이 당사국총회로부터 전달받은 위임사항*을 분석하여 공급자 중심을 대체할 수 있는 키워드를 분석하고, CTCN 활동과 연계성이 확인된 역제안 사업의 프로그램 유형 모색

  * CTCN은 당사국총회로부터 위임사항을 전달받고 이를 수행 후 그 결과를 보고하고 다시 전달받는 절차를 반복. 즉, 당사국총회의 결정문이 모든 CTCN 활동의 근간이 됨:
  ① 당사국총회에서 CTCN에게 위임사항을 전달[12)]
  ② CTCN 이사회에서 CTCN 활동을 논의 및 결정
  ③ 연말에 CTCN 이사회 의장 또는 부의장이 COP에 위임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보고[13)]

8) UNFCCC. (2012). Decision 2: Outcome of the work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9) UNFCCC. (1995). Decision 11: Initial guidance on policies, programme priorities and eligibility criteria to the operating entity or entities of the financial mechanism, para 1(a)(ii)
10) UNFCCC. (2011). Decision 3: Launching the Green Climate Fund, Annex para 3
11) GEF. (2021).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Guidance from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Responses by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COP1-COP25
12) UNFCCC. (2010). Decision 1: The Cancun Agreements: Outcome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para 117
13) UNFCCC. (2014). Decision 25: Modalities and procedures of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and its Advisory Board Annex II, para 17

표 1 CTCN 관련 COP 결정문 상 키워드 정리

키워드	관련 문서	상세 내용
북-남, 남-남 및 삼각협력	CTCN의 기능	민간, 공공기관, 학계 및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기존 및 신규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의 개발 및 이전과 북-남, 남-남 및 삼각협력 기회 강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북-남, 남-남 및 삼각협력 촉진을 위한 트위닝 센터 설립 강화
	기술 프레임워크	이행 주제의 행동과 활동은 협력적 기술 개발 및 이전을 촉진하고 기술 메커니즘의 이행 시 남-북, 남-남, 삼각 및 지역 협력의 역할을 고려
	기술-재정 연계	COP이 GEF에게 전한 위임사항으로 TEC과 CTCN과 함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
RD&D	CTCN의 지침과 절차	CTCN은 개도국의 TNA, NAPA, RD&D 관련 활동을 포함한 기타 국가 기후변화 전략을 바탕으로 제안서 작성 지원
		회원기관이 기술 RD&D 발전을 위해 관련 기관 간의 민관 협력 및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포럼 개최
	기술 프레임워크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기후기술 연구, 개발 및 확산(RD&D)의 새로운 협업 접근법 통해 지원
	기술-재정 연계	CTCN은 GCF와 협력하여 기후기술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를 지원하기 위한 RFP 작성
이해관계자 협력 / 기후기술 매치메이커	CTCN의 기능	민간, 공공기관, 학계 및 연구 기관과 협력 강화,
	CTCN의 지침과 절차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포럼 개발 및 촉진
	기술 프레임워크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력과 기타 기관 및 이니셔티브와의 협력 지원
	기술-재정 연계	COP이 GEF에게 전한 위임사항으로 지속적인 공동 작업뿐만 아니라 행사 개최 등의 추가 협업과 참여를 장려
	2차 CTCN 독립평가보고서	CTCN이 NDE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UNFCCC 사무국과 연락하여 재정 메커니즘, 양자, 다자 및 민간 채널, 자선 소스, 그리고 UNEP, UNIDO와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재정적, 현물적 기여 등을 강화
		CTCN이 민간 부문 네트워크 구성원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기후기술 '매치메이커'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을 요청

CTCN의 설립과 기능(2011)

- 2011년 COP16 결정문에 따라 CTCN의 설립과 그 기능이 결정되었으며 개도국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활동 수행,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명시[14)]
  - CTCN의 기능으로 개도국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서 개도국에 기존 기술의 확산을 위한 빠른 대응 촉진하며 **민간, 공공기관, 학계, 연구 기관 등과 협력**하여 기존 또는 신규 기술의 개발 및 이전과 **북-남, 남-남 및 삼각협력 기회 강화**와 해당 협력의 촉진을 위한 트위닝 센터 설립 강화와 국가, 지역, 분야의 국제 기술 센터, 네트워크, 조직 또는 이니셔티브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명시

14) UNFCCC. (2010). Decision 1: The Cancun Agreements: Outcome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para 123

CTCN의 지침과 절차(2013)

- 2013년 COP18 결정문에 따라 CTCN의 역할과 책임, 개도국 NDE 요청 관리 및 대응, 기후기술 이전 관련 정보 및 지식 협력과 접근성 촉진,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그리고 역량 강화, 기술집행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TEC)와의 연계, 정보 및 지식 공유 내용 구체화[15)]
  - CTCN의 역할과 책임으로 CTCN 사무국이 NDE를 통해 접수된 개도국 당사국의 요청을 수신하는 역할을 명시
  - CTCN의 양식 중 하나로 개도국 NDE 요청 관리 및 대응으로 CTCN이 (a) 기술수요평가(Technology Needs Assessment, TNA), 국가적응활동프로그램(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 NAPA), **기술개발 및 확산(Research, Development & Dissemination, RD&D) 관련 활동**을 포함한 기타 국가 기후변화 전략을 바탕으로 제안서 작성을 도와 재정 메커니즘, 국제 재원 기관 및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이행과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b)TNA, 국가기술로드맵, 활동계획 등의 개발, 기후기술 계획 및 이행, 이행을 돕기 위한 정책과 수단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제공, (c)기후기술 확인, 계획 및 이행을 위한 툴 자문 등 지원을 제공, (d)기후기술의 이행을 돕기 위한 정책 및 수단에 대한 자문 등 지원을 제공하며 (e)수요를 제공 가능한 지원과 매치하고 지원에 대한 접근성 촉진을 명시

CTCN-TEC 공동연차보고서

- 2010년 COP16은 CTCN과 TEC가 COP에게 각자 기능에 따른 활동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2013년부터 CTCN과 TEC가 공동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16)]
  - (개도국 당사국 요청 대응 우선순위 기준 수립) CTCN 사무국장은 ① 내생적이고 가장 적절한 기술과 프로세스를 촉진, ② "사업 준비성"을 보이며 국가, 지역 및 국제적 복제 또는 스케일업 가능성 입증, ③ 국가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간 **남-남,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촉진, ④ 요청에 대한 다국가 접근법과 지역적 묶음 촉진 ⑤ **공공 및 민간 재원 조성**, ⑥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익을 촉진, ⑦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양성평등과 권한 부여를 촉진하는 사업을 우선시함[17)]
  - (CTCN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원 조성) 2011년부터 CTCN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기 위한 다양한 재원을 나열했으며 재원을 제공할 수 있는 당사국의 지원을 촉구해왔으며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재원 조성**은 지속적으로 언급됨[18)]. 2018년 제11차 CTCN 이사회에서 재원 조성 전략 중 하나로 프로보노* 지원을 제시하였으며[19)], 2019년 COP25이 CTCN에게 프로보노 지원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이에 따른 성공사례와 교훈을 공유할 것을 요청[20)]

15) UNFCCC, (2013). Decision 25: Modalities and procedures of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and its Advisory Board, Annex I, para 2
16) UNFCCC. (2013). Joint annual report of the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and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for 2013
17) CTCN. (2013). Prioritization criteria for responding to requests from developing country Parties
18) UNFCCC. (2011). COP Decision 2: Outcome of the work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para 139
19) CTCN. (2018). CTCN Resource Mobilization Strategy

* 프로보노란 CTCN의 한정적인 운영예산 하에서 증가하는 개도국의 기술지원(TA)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절차로, 선진기술 보유 공여국 또는 수행기관이 자체 예산으로 CTCN에 접수된 개도국의 TA 요청에 대응하는 절차로, 투입 예산은 공여국의 기여분으로 인정

기술 프레임워크

- 기술 프레임워크는 기술 메커니즘이 당사국을 지원하는 업무 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제정됨. 해당 프레임워크의 다섯 가지 주요 주제는 기술 메커니즘이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업무 영역으로 ① 혁신, ② 이행, ③ 가능여건과 역량배양, ④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그리고 ⑤ 지원이 있음[21)]
  - (혁신) **협력적 RD&D**, 혁신을 위한 가능정책 및 재정의 활성화, **민간분야의 참여와 민관협력**
  - (이행) 기술수요평가, 이전 가능 기술을 평가, 장애요소 해결 권고사항 모색
  - (가능여건과 역량배양) 개도국에서 기술개발 및 이전 활동에 필요한 가능여건을 조성하고 개도국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제공
  - (협력과 이해관계자 참여)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력**과 기타 기관 및 이니셔티브와의 협력 지원
  - (지원) 기술 메커니즘과 재정 메커니즘간의 협력 증대, 기술 사이클 상에서의 각 단계별로 혁신재정 및 투자를 모색하고 장려, 개도국 기술지원 증대 및 기존 주요주제 상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한 지원, 프로보노 및 현물 지원와 같은 다양한 출처 및 형태의 지원 동원 강화 등

기술-재정 메커니즘 연계

- 2012년 COP18은 기술과 재정메커니즘의 연계 논의를 발전시킬 것에 합의[22)]하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당 아젠다를 논의
  - (RD&D) 개발도상국이 **공동 연구 및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CTCN은 GCF와 협력하여 **기후기술 인큐베이터 및 액셀러레이터**를 지원하기 위한 RFP 작성[23)]
  - (GCF-CTCN 협력강화) COP26은 GCF가 CTCN과 TEC와 지속적인 **공동 작업**뿐만 아니라 행사 개최와 젠더 주류화 및 옵저버 참여 등의 추가 협업과 참여를 장려함[24)]
  - (GEF-CTCN 협력강화) COP26은 GEF가 지역 차원의 이해관계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교육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TEC과 CTCN과 함께 **남남협력 및 삼각협력을 확대**할 것을 촉구함[25)]

20) UNFCCC. (2019). Joint annual report of the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and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para 22
21) UNFCCC. (2018). Technology framework under Article 10, paragraph 4, of the Paris Agreement
22) UNFCCC. (2012). Decision 1: Agreed outcome pursuant to the Bali Action Plan, para 62
23) UNFCCC. (2015). Decision 13 :Linkages between the Technology Mechanism and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24) UNFCCC. (2021). Report of the Green Climate Fund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guidance to the Green Climate Fund, para 5
25) UNFCCC. (2021). Report of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guidance to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para 16

CTCN 독립평가보고서

- CTCN이 위임사항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지와 운영주체인 UNEP과의 운영계약 연장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로 재정, 지배구조 및 조직, 포지셔닝에 대한 총 7개의 권고사항을 제시[26)]
  - (재정) CTCN이 UNEP과 협력하고 의사회와 협의하여 CTCN 관련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 동원을 강화하고, TA에 대한 주기적인 사후 임팩트 평가를 위한 재원을 할당할 것을 권장함에 따라, COP은 UNFCCC 사무국과 논의하여 재정 메커니즘, **양자, 다자 및 민간 채널,** 자선 소스, 그리고 유엔환경계획(UNEP),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와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재정적, 현물적 기여 등**을 강화하고 기술지원의 규모화(scale-up)을 목적으로 재정 메커니즘의 운영 기관들과 지속해서 협업할 것을 요청[27)]
  - (지배구조 및 조직) CTCN 사무국이 공동 호스트인 UNEP 및 UNIDO와의 협력을 강화, CTCN이 회원기관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강화, CTCN이 NDE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노력과 개선된 TA를 제공할 수 있도록 NDE의 역량배양 지원을 강화할 것을 권장함에 따라, COP은 **CTCN이 NDE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또한, 개도국 NDE들이 NDE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배양을 위한 지원 제공을 강화할 것을 요청
  - (포지셔닝) CTCN이 가용 예산으로 세 번째 작업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해결 가능한 잠재적 수혜자 수요의 평가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기후기술 매치메이커로서의 위치를 다지기를 권장함에 따라, **COP은 CTCN이 민간 부문 네트워크 구성원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기후기술 '매치메이커'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을 요청

시사점

결정문 상 키워드 중심의 역제안 접근법 선택 필요

-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상위 문서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COP 결정문, 이사회 자료 등 CTCN 설립 및 운영 관련 문서가 명시한 개도국 주도기조의 확고함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상충되는 공급자 주도 강조의 역제안 접근방식의 한계점 확인
- 하지만, 본 분석을 통해 도출한 CTCN 관련 COP 결정문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주요 키워드인 "이해관계자 협력/기후기술 매치메이커"를 강조하여 역제안 사업의 추진 가능성 확인
  - CTCN이 NDE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 매치매이킹 행사 중 CTCN이 주관하는 한국-개도국 NDE 간의 양자 협의를 통하여 정부 차원의 역제안 사업 추진의향 확인 및 차년도 추진 TA 사업 확정
- 또한, ① 북-남, 남-남 및 삼각협력, ② RD&D에 착안하여 CTCN의 기능과 역할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지원 사업 프로그램 제안 가능
  - (북-남, 남-남 및 삼각협력) CTCN의 선진국 컨소시엄 파트너 기관 또는 회원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우리나라 CTCN 회원기관, 개도국 간 기후기술 지식공유 및 기술지원

26) CTCN. (2021). Report on the second independent review of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27) UNFCCC. (2021). Second review of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사업 등 삼각 협력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도국 국가지정기구, 한국 기후기술 보유기관, 선진국 녹색기후기금(GCF) 인증기구(AE)를 활용하여 대규모 기후기술 사업화 방안 모색

※ CTCN이 제공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기술 전문기관으로 선진국 기관으로는 GIZ(독일), NREL(미국), TNO(네덜란드), UNCCC(덴마크)가 있으며 전체 CTCN 회원기관(730개 기관) 중 선진국 회원기관 23개국, 총 340개 기관('22.6. 기준)

- (RD&D) GCF 본사업과 같은 대형사업으로 스케일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CTCN TA의 이행결과를 RD&D 요소 중 하나인 소규모 실증으로 연계하여 개도국 현지 사업화를 위한 준비 실행

※ 개도국 현지 기술 이전을 위한 계획(합작투자 설립, 기술 라이선스 계약, 현지 자회사 설립 등) 수립 내용 포함

Reference

1) 양리원 외, 한-CTCN 협력 프로그램 확대 및 고도화 연구 : CTCN 기술지원(TA)을 중심으로 – 1차년도, 2020
2) 손지희 외, 한-CTCN 협력 프로그램 확대 및 고도화 연구 : CTCN 기술지원(TA)을 중심으로 – 2차년도, 2021
3) UN,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1992
4) UN, Paris Agreement, 2015
5) UNFCCC, Decision 2: Outcome of the work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2012
6) UNFCCC, Decision 11: Initial guidance on policies, programme priorities and eligibility criteria to the operating entity or entities of the financial mechanism, 1995
7) UNFCCC, Decision 3: Launching the Green Climate Fund, 2011
8) GEF,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Guidance from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Responses by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COP1-COP25, 2021
9) UNFCCC, Decision 1: The Cancun Agreements: Outcome of the 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2010
10) UNFCCC, Decision 25: Modalities and procedures of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and its Advisory Board, 2013
11) UNFCCC, Joint annual report of the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and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for 2013, 2013
12) CTCN, Prioritization criteria for responding to requests from developing country Parties, 2013
13) CTCN, CTCN Resource Mobilization Strategy, 2018
14) UNFCCC, Joint annual report of the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and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2019
15) UNFCCC, Technology framework under Article 10, paragraph 4, of the Paris Agreement, 2018
16) UNFCCC, Decision 1: Agreed outcome pursuant to the Bali Action Plan, 2012
17) UNFCCC, Decision 13 :Linkages between the Technology Mechanism and the Financial Mechanism of the Convention, 2015
18) UNFCCC, Report of the Green Climate Fund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guidance to the Green Climate Fund, 2021
19) UNFCCC, Report of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to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guidance to the Global Environment Facility, 2021
20) CTCN, Report on the second independent review of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2021
21) UNFCCC, Second review of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 2021

본 내용은 녹색기술센터(GTC)의 수탁사업(기후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정책지원 사업)으로 수행한 내용의 일부를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GTC 녹색기술센터
GREEN TECHNOLOGY CENTER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남산스퀘어 빌딩 17층
Tel. 02.3393.3900
Fax. 02.3393.3919~20
www.gtck.re.kr

* 본 GTC BRIEF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센터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